

■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안내 ■

(주관:중소벤처기업부 / 시행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/ 공고일: 2023년 3월 28일)

■ 신청기간: 23.3.28 (화) ~ 23.4.17 (월) 15:00 까지

■ 지원구분: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등

■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

1. 지원목적:창업·사업모델 전환·확정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실질적인 지원책 제공으로
창의 소상공인 발굴·육성

2. 지원규모: 1,600건 내외 (상반기 800건 / 하반기 800건) - 권역별 모집·선정

권역	서울강원	경기인천	대전충청	대구경북	광주호남	부산울산경남	계
건수	200	200	100	100	100	100	800

3. 지원항목

지원항목	지원내용	지원금액
제품 가치 향상	브랜딩, 디자인 개발, 신제품 및 메뉴 개발, 상품 기획 등	최대 300만원 이내
판로 창출	SNS 마케팅, 온라인몰(배달앱) 입점 등	
스마트 전환	모바일 홈페이지 개발, 정보화 구축 등	
경영·기술 혁신	경영 전략 수립, 구조개선, 인증 획득, 제품 시험 등	
법률 지원	특허, 법률, 세무, 회계, 노무 등	
점포 개선	간판, 점포 리모델링, 안전·보건 시스템 구축 등	
지식재산권	상표 등 IP 상담 및 출원지원	

4. 지원대상 : 소상공인 (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)

- ①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/
그밖의 업종은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자
- ② 대표 1인 기업 가능
- ③ 골프연습장(91136) /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 지원가능
- ④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

5. 주요 지원 내용

- ① 컨설팅: 컨설턴트 방문 컨설팅 진행함
<지원조건> 컨설팅 비용 60만원 (국비 100%) 지원
- ②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: (반응형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)
<지원조건>

총사업비		3,000,000원	※ 세금계산서 발행 (공급가+부가세) = 3,300,000원 ※ 부가세는 추후 국세청을 통해 환급 가능
정부지원금	80%	2,400,000원	
본인부담금	20%	600,000원	
	부가가치세(10%)	300,000원	

6. 신청방법

- ① 소상공인 마당 (www.sbiz.or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 ▶ 소상공인컨설팅 ▶ 사업공고
 - ▶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시행공고(기업가형 육성 컨설팅) 신청하기 클릭
 - ▶ 자가진단서 항목 체크 후 제출 ▶ 구비서류 첨부 ▶ 사업수행계획서 첨부 ▶ 완료
- ② 구비서류 준비 후 온라인 신청 · 접수 : www.sbiz.or.kr “소상공인마당”

7. 구비서류 (모두 발급하여 PC 저장 후 사이트에 업로드)

공 통 서 류	사업자등록증 1		
	사업수행계획서 7장 이내 작성(별도양식): <i>작성시, 신청항목-“스마트전환” 체크 / 아이템- “모바일 홈페이지개발”</i>		
상 시 근 로 자 확 인 용 선 택 1	1인 이상 사업자 (근로자가 1인 이상 있음)	1인 사업자 (근로자 없고 대표만 있음)	창업 1년 미만 및 예비 창업자일 경우
	-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 (고용/산재) -건강보험(월별)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내역) -개인별 건강보험고지 산출내역 -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	-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전체내역) :대표개인것임	-본인명의 임대차계약서 -등기사항전부증명서 (자가건물인 경우) 선택 1
매출액 확인용 선 택 1	-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-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	-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-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	
위 두 가 지 서 류 제 출 불 가 시	중소기업확인서 (유효기간 내) 1		

8. 신청 시 유의사항

- ※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과 수출 바우처는 중복 지원 불가
- ※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(공휴일 포함) 미입금시 자동으로 취소처리됨
- ※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(공휴일 포함)에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
- ※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신청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

9. 지원절차

사업신청	23.3.28~4.17 (15시)	www.sbiz.or.kr 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 실행 ▶ 구비서류 첨부 ▶ 사업계획서 첨부	*제출서류 모두 PC에 저장 후 온라인에 첨부함
선정	약 30일 이내	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·선정	기관별 선정
컨설팅업체 방문	선정 후 약 1~2주 후	과제수행을 위한 컨설팅 실행 공급사:(주)아이케이디 (010-2471-6730)	컨설턴트
자부담 입금	컨설팅 후 7일 이내	자부담(60)+부가세(30)= 총90만원 입금	공급사로 입금 (세금계산서발행)
홈페이지 공급 및 사용	약 60일 이내	입금증, 협약서, 견적서 등 공급사 및 컨설팅사에 전달	계약서 작성기준 1년 A/S 무료

10. 선정방법 : 사업수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 후 선정 (100점 + 가점5점)

평가항목	평가지표	세부평가 내용	배점
아이디어의 적절성	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	-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참신성 및 우수성 -지원항목 필요성 -사업수행 타당성	20
	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	-사업계획의 구체성 -사업화 전략	30
아이디어 실현 능력	대표자 마인드 및 가치관	-업력, 경영상태, 개척의지, 실행의지 자부담 능력 등 대표자 보유역량	20
	아이디어 실현 후 경영개선 가능성 및 효과성	-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-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	30
가점	-수상경력 -보유 특허·디자인증 등		5

※ 가점 서류 (해당시만 제출함)

- [해당시] 최근 3년 내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명의의 표창 또는 상장
- [해당시] 보유한 특허·디자인·실용신안등록·상표등록 등

제출서류		발급처
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전체내역) 대표개인	상시근로자 없는 경우	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ps.or.kr) 또는 ☎1577-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
건강보험(월별)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내역)	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중 택1	
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		
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(세무대리인 직인 또는 본인 서명)		
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 (고용, 산재) (22년 1월~12월)		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 또는 ☎1588-0075(고객지원센터) 문의
소상공인확인서 (유효기간 내 확인)	위 서류 불가 시 제출	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 - 발급방법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→ 온라인자료제출하기 → 제출자료 조회하기 → 신청서 작성하기 → 신청서 제출 → 확인서 출력
사업자등록증	중 택1	세무서, 국세청 홈텍스(www.hometax.go.kr)
사업자등록증명 (최근 1개월 이내)		
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(최근 1년)	중 택1 또는 소상공인확인서	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 금액증명		
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	창업1년미만 및	보유 중인 임대차계약서 사본
등기사항전부증명서 (자가건물인 경우)	예비창업자 경우 택1	등기소,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

공통서류	사업자등록 확인서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 	
	소상공인확인 서류	상시 근로자 확인	<p>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건강보험(월별)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내역)</u> ② <u>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</u> ③ <u>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</u> (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) ④ <u>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</u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제출방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: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-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'22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<p>(예시) ① '21.9.1~현재 : '22년 12개월분 제출 ② '22.1.1~현재 : '22년 12개월분 제출 ③ '22.2.1~현재 :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</u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또는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효기간 내 <u>소상공인확인서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*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
공통서류	소상공인확인 서류	매출액 확인	<p>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</u> 또는 <u>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</u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제출방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<p>예) 사업개시일이 '22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, '22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'19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, '22년 상·하반기내역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3.1.1.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- '23.9.1.이후 신청하는 경우 '22년 하반기 및 '23년 상반기 내역 제출 </div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또는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효기간 내 <u>소상공인확인서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*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
		예비 창업자	<p>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이전에 발급된 <u>사업자등록증</u> * 예) 신청일이 '23.3.16.이나, 사업개시일이 '23.3.31.인 경우 • <u>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</u> • <u>등기사항전부증명서(자가 건물인 경우)</u> 	